

등록번호	문화체육과-2172
등록일자	2016.2.4.
결재일자	2016.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천정훈	조영아	이현근	오제성	02/05 조인동
협 조	예산팀장 주무관	김정현 정경자		

---

## 2016년 서대문 지역문화예술 지원 계획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2016년 서대문 지역문화예술 지원 계획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우리구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1.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 지원 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지원분야
  - 문화예술단체 : 서대문구에 연고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 활동
  - 문화예술행사 :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 문화예술교육 :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
- 지원범위 : 각 분야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갖춘 자
- 사업비 : 56,200천원

### 3. 지원사업 세부사항

####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공동체의 유대관계 증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지원대상 : 3 ~ 4개 단체
  - 서대문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국가 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동일(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
  -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고 7,000천원 최저 1,000천원(신청단체 사업비 자부담 10% 확보 조건)
- 지원방법 :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지급
- 사업비 : 18,200천원

## ■ 민간 주도형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서대문구에서 민간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분야의 행사 및 축제
  - 지역 주민의 주체적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소통과 결속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 지원대상 : 3 ~ 4개 단체
  - 서대문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행사 또는 축제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단순 친목단체
- 종교 또는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
- 기존 지원받은 사업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사실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
- 국가 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동일(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
  -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7,000천원 최저 1,000천원
- 지원방법 :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지급
- 사업비 : 18,000천원

## ■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전문연극인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연극이론 강의, 연기 지도 및 실습 등 연극교실 운영
  - 수료생과 전문연극인이 함께 공연을 제작하여 결과발표회 개최, 지역사회와 성과 공유

- 지원대상 : 1~2개 단체
  - 서대문구에 연고를 둔 연극교육 및 공연실행 능력을 갖춘 예술단체로서
  - 최근 1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또는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단순 친목단체
- 종교 또는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
- 기존 지원받은 사업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사실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
- 국가 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동일(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
  -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
  - 지원항목 : 강사비, 교육운영비, 성과공유 행사비 등
- 지원금액 : 최고 20,000천원 최저 5,000천원
- 지원방법 :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지급
- 사 업 비 : 20,000천원

## 4. 세부추진계획

### ■ 사업 추진 절차



## ■ 사업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2016. 2. 5 ~ 2016. 2. 17(13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서류 등

## ■ 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2. 5 ~ 2016. 2. 17(1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09:00~18:00) 이내
  - 이메일 접수 : [sdmg1530@sdm.go.kr](mailto:sdmg1530@sdm.go.kr) 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전송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 등

## ■ 사업 계획 및 지원 타당성 검토

- 신청단체 지원자격 적합성 검토 -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규정 충족 여부
- 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집행계획 타당성 검토
- 신청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및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검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 여부 검토  
⇒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

## ■ 사업 심의·선정 및 결과 통보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6. 3. 3(목)(정책기획담당관)
  - 지원단체(사업) 및 지원규모 선정 심의
- 심의사항
  - 신청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년도 교부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선정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 정책기획담당관 → 문화체육과 → 신청단체
  - 지원결정된 단체에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개
- 협약 체결 : 구청과 선정된 단체 간 사업추진에 대한 약정 체결

##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신청에 따라 교부
  -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계좌 개설 및 자부담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집행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의무 사용
  -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준수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가능

## ■ 정산 및 결과 보고

-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결과 검사
  - 단체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 적합할 경우 : 정산결과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부적합할 경우 : 사안에 따라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 평가 및 환류

- 평가시기 : 2017년 1월까지
- 평가목적 :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내실을 기하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역량 강화 및 수준 제고
- 평가방법
  - 현장평가 : 각 사업 담당별 행사, 강좌 등 보조사업 수행 여부 현장 점검
  - 성과평가 : 보조사업 평가보고서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 평가
- 평가결과 :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에 반영하여 민간사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

## 5. 행정 사항

---

■ 지역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기획담당관

■ 사업공모 홍보 : 구 홈페이지, 기존 참여 단체 메일 발송 등

- 붙임 : 1. 2016년 서대문구 지역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안) 1부  
2. 2016년 서대문구 지역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식 1부  
3. 2016년 서대문구 민간 주도형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모 공고(안) 1부  
4. 2016년 서대문구 민간 주도형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식 1부  
5. 2016년 서대문구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단체 공모 공고(안) 1부  
6. 2016년 서대문구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단체 공모 신청서식 1부. 끝.